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병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628

발의연월일: 2021. 7. 21.

발 의 자:서병수·서일준·정경희

홍문표 • 류성걸 • 전봉민

김형동 · 조경태 · 윤창현

양금희 · 최형두 · 김은혜

구자근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새마을금고의 이사장 및 중앙회 회장 선거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며, 감사위원회는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대한 재산과 업무집행 상황에 대해 총회와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새마을금고를 제외한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의 대표 선거의 경우에는 그 선거의 업무가 의무위탁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는 반면, 새마을금고의 경우 각 조합 이사장 선거의 경우 재량위탁으로 되어있어 후보자 간 경쟁 심화 등 여러 선거 부정 논란이계속되고 선거 공정성 확보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감사위원회의 활동이 현실적으로 독립적인 활동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이에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와 중앙회 회장 선거에 대하여 해당

지역 소관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위탁을 통해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선거의 형평성을 기하는 한편, 감사위원회의 감사로 금고의 경영 또는 업무집행이 법령과 정관에 위배되거나 또는 그러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시 의무적으로 감독기관인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하여 감사위원회의 실질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함임(안 제23조의2 단서 및 제62조제3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병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63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 중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이 조에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이사장 선거의 관리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한다.

제6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③ 감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감사를 하는 때에 중앙회의 재산과업무집행 상황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배되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4조의2제6항 후단 중 "제25조제6항"을 "제23조의2 단서 중 "이사장"은 "회장"으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각각 보고, 제25조제6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거관리의 위탁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2(제64조의2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금고 이 사장 또는 중앙회 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정 혅 했 개 아 제23조의2(선거관리의 위탁) 금고 제23조의2(선거관리의 위탁) ---는 임원선거의 관리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 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구・시・군선거관리위원 ----구·시·군선거관리위 원회(이하 이 조에서 "구・시 회에 위탁할 수 있다. <단서 신설> •군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 다만. 이 사장 선거의 관리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 ·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 탁하여야 한다. 제62조(감사위원회의 임무 등) ① 제62조(감사위원회의 임무 등) ①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감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감사를 하는 때에 중앙회의 재 산과 업무집행 상황이 법령 또 는 정관에 위배되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해당 사항을 행정안전부장 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 ④ (생 략)

- ⑤ 제1항부터 <u>제4항</u>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사위원회 의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64조의2(임원의 선출과 임기 저 등) ① ~ ⑤ (생 략)
 - (6) 중앙회에 관하여는 제18조 제8항 본문, 같은 조 제9항, 제19조제8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제12호의2・제13호・제13호의2・제14호・제15호, 제2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1조의2,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 제25조, 제26조제1항 및제2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5조제6항 중 "이사장과 부이사장"은 "회장, 부회장과 상근이사"로, "감사"는 "감사위원장"으로 각각 본다.

<u>④</u> ・ <u>⑤</u> (현행 제3항 및 제4항
과 같음)
<u>6</u> <u>শ্রিচ্</u> ট্ট
세64조의2(임원의 선출과 임기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6
<u>제23</u>
조의2 단서 중 "이사장"은 "회
장"으로, "구・시・군선거관리
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
회"로 각각 보고, 제25조제6항-